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936호 2023. 11. 8.(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73호 거창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 2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132호 도로명주소 고시 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1624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거창군 공고 제2023-1644호 거창군 군유임산물(입목) 매각 입찰 공고 12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3년 11월 8일

거창군 훈령 제473호

거창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리부서의 장이”을 “부군수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심의기구의 구성) ①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u>관리부서의 장</u>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처장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한다.</p> <p>④ 심의기구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직근로자 등의 인사·복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p> <p>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u>공무직 근로자</u>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p> <p>② 채용부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p>	<p>제5조(심의기구의 구성) ①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처장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한다.</p> <p>④ 심의기구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직근로자 등의 인사·복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p> <p>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u>공무직 근로자 등</u>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p> <p>② 채용부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p>

「거창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일부개정

I 개정사유

- 규정 취지에 맞게 조문 내용 수정
 - 채용심의회기구 위원장 직책 변경(관리부서의 장 → 부군수)
- 단순 오탈자 수정

II 개정내용

- ‘채용심의회기구’ 위원장 직책 변경 : 제5조(심의회기구의 구성)
 - 규정의 취지상 채용심의회기구 위원은 관련부서의 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함으로 채용심의회기구 위원장의 직책을 관리부서의 장에서 부군수로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심의회기구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 이 되며~	심의회기구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8.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1198-45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3-1624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전입정착금, 양육지원금 및 빈집정비 지원금을 증액하고 전입 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시·군과의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금 증액(안 별표)

1) 전입정착금

- 가. 1인 세대 10만원
- 나. 2인 세대 20만원
- 다. 3인 세대 30만원
- 라. 4인 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자 1인당 50만원(생활관비 또는 학자금 지원자 제외)

2) 양육지원금

- 가. 첫째·둘째 10만원 ⇒ 30만원

3) 빈집정비 지원금

가. 1인 세대 150만원

나. 2인 세대 이상 300만원

⇒ 전입세대 당 500만원

나. 지원기간 확대(안 별표)

1)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가. 생활관비 30만원x4학기 ⇒ 생활관비 30만원x8학기

5.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 ~ 11. 22.

6.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7.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인구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인구교육과)

라. 전화 : 055-940-8883, 팩스 055-940-8905, 이메일 csh0710@korea.kr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출산축하금란을, 양육지원금란을, 전입정착금란을, 빈집정비지원금 지원란을,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지원	출산 축하금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면서,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부 또는 모	가. 첫째 500만원 나. 둘째 500만원 다. 셋째 이후 500만원 출생아 당 500만원
영유아 양육 지원	양육 지원금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다만, 전입세대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입한 달부터 지급하되,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가. 첫째, 둘째: 출생일이 속하는 달 부터 20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30만원 나. 셋째 이후: 출생일이 속하는 달 부터 60개월까지 매월 30만원 지급 다만, 출생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
전입지원	전입 정착금	전입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전입세대	가. 1인 세대 20만원(생활관비 또는 학자금 지원자 제외) 나. 2인 세대 50만원 다. 3인 세대 70만원 라. 4인 이상 세대 100만원 전입자 1인당 50만원 지원 (생활관비 또는 학자금지원자 제외)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빈 집 정 비 지원금 지 원	전입세대	<u>500만원</u>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다만, 1명 전입 시 150만원
전입지원	전입 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 고 있다가 군내 대학 생활관으 로 전입하는 대학생	학기별 30만원 이내, 재학 중 최대 4학기 지원 <u>8학기</u> ※ 학자금과 생활관비는 중복지원 불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2조(인구증가 지원사업)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과 출산 지원

가. 출산 축하금

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다. 임신축하 기념품 등

2.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 양육지원금 지원 등

3.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세대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4. 전입세대의 정착 지원

가. 전입정착금

나. 빈집정비 지원

다. 전입 고등학생·대학생 장학금·학자금, 대학생 생활관비 등 지원

5. 그 밖에 군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

가. 국적취득자 지원

나. 거창에서 살아가기 지원 등(타조례 개정2022.4.1.)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대상·금액 등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2조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균유임산물(입목) 매각 입찰 공고

균유림 내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의 매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거창군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거창군 균유임산물(입목) 매각

나. 산물소재지 및 수량 등

산물소재지	면적 (ha)	수종	수량		예정가격 (원)	벌채·반출기한 (물건인도 일로부터)
			본수	생산재적 (m³)		
합 계	19.5		19,618	2,790.77	94,131,440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산247, 산247-2 (1임반 1소반, 2임반 1소반)	19.5	소나무	1,425	584.99	42,418,210	인도일로부터 2024.1.19.까지
		낙엽송	1,520	792.98	42,388,750	
		기타활엽수	16,673	1,412.80	9,324,480	

※ 표준지조사에 의하여 산출된 수량이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 유의사항

- 1) 입찰자는 벌채구역도, 운재로 예정노선, 현지 물건 및 반출 여건 등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2) 생산수량은 표준지 조사 및 조재율에 의해 산정되었으므로 수종별 제재목

및 생산량(재적) 상이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3) 매수자는 사업 시행 전 반드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 신고를 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4) 임산물 반출에 필요한 운재로는 예정노선에 따라 매수자가 개설하여야 하며 예정노선은 거창군(산림과)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거창군(산림과)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유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수자가 협의 처리하여야 합니다.
- 5) 산물반출로 인하여 산림 및 주변 농경지, 민가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및 민원 발생 시 매수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 6) 벌채구역 내 수림대가 분포하므로 경계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경계를 침범하여 벌채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7) 입찰 후 낙찰 물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055-940-3463)

3.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에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시스템에서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개인, 일반 또는 법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제재 중에는 대리인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5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자격증 사본
-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경우 :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임업 훈련 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 원목생산업등록증 사본
- 마. 입찰에 참여하는 응찰자는 현지확인 협약서(붙임2)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거창군 산림과 산림조성담당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응찰자 제출서류

- 가. 2023년 11월 15일(수) 16:00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바랍니다.
(당일 도착분까지 한하여 유효함)
- 나.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산림과(우 50132)
- 다. 팩스 : 055-940-3459
(단, 팩스로 제출된 서류는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팩스로 송부한 서류와 원본이 상이한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차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 팩스 제출 시 입목매각 담당자와 수신 상황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응찰자가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됨.

5. 입찰 및 낙찰자 선정(개찰) 일정

- 가. 입찰서 접수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23. 11. 8.(수) 16:00 ~ 11. 15.(수) 16:00
- 나.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 다. 개찰일시 : 2023. 11. 16.(금) 10:00
- 라. 개찰장소 : 거창군 입찰집행관 PC(※ PC사정 등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음)

6. 입찰서의 제출

-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으로 합니다.
- 다.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라.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마.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은 고지서로써 통보되는 기한 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거창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무효 처리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상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분할납부 불가)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와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금액을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10.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운용담당자(1588-5321)**에게 문의하시고,
- 나.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정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위의 ‘가항’ 및 ‘나항’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 나.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제반사항 미비로 낙찰 제한 및 불이익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라.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구축한 온비드를 활용하는 입찰입니다.

- 마. 본 입목 매각 지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인가 지역으로 **2024년 조림사업 대상지로서 벌채지 정리 작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벌채산물 전량 수집(지조물 포함)**
- 바. 생산채 반출에 따른 운재로는 입목 매수자가 직접 개설·보수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 매수 산물의 벌채 및 반출 시 주변 입목 및 시설을 파손·훼손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사유지 통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아. 응찰자는 거창군 산림과에 비치되어 있는 계약서(안), 재적조서, 도면을 열람하시고 현지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입찰 등록을 마친 자는 매각 물건의 제반사항을 열람·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낙찰자에게 취득제한이나 행정·법령상 규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도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차. 벌채 구역 내 나무의 가슴 높이 부분에 노란색 페인트 표시목은 「산림청 친환경 벌채 운용 요령」에 다른 존치목으로 벌채 제외목입니다.
- 카. 매수산물 중 소나무는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운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매수자가 져야 합니다.
- 타.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1) 매각내용 및 현장 정보에 관한 문의사항
 - 문 의 처 : 055-940-3463(거창군 산림과)
 - 2)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 문 의 처 : 055-940-3263(거창군 재무과)
 -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입찰방법(입찰자)문의처 : 1588-5321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군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유임산물 매각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계약명 :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

○ 개소 : , 지목 : , 면적 : m², 목적 :

《계약자(신청자)》

1. 본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법행위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계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담당공무원》

1. 우리군에서는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군 관계 공무원은 귀하(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계약자(신청자)

성 명 : (인)

담당공무원 거창군 산림과

직 : 성명 : (인)

거창군수 귀하

현지확인 등 협약서

입찰(계약)건명 : 국유임산물(생산재) 매각 공고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공고로 게시된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서(안), 일반매각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재적조서 열람 및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 상기 제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으나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인)

담당공무원: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2.24.>

군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1쪽)

임산물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목	경영계획구	임반·소반
반출(벌채)기간	인도일부터	개월 이내				
채취(벌채)면적	m ²					
임산물 종류	수량				용도	
	본수(본)	입목재적(m ³)	조재(제탄)율(%)	매각수량(생산지정) [m ³ , 톤(t)]		
매각대금	원					
계약보증금	원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관(갑)

인

매수인(을)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주: 입목·원목 외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군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1조(대금납입) 을은 매각대금을 소관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따라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초 대금납입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되, 이 경우 을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갑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을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임산물의 수령) 을은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을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군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임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의 다음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혹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생장량 대금 = 1㎡당 단가 × 미벌채 재적 × 0.05 × 생장기간 해당 개월 수 / 7

* 1㎡당 단가는 매각 시 산정한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 단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을이 임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연체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 납입지연 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5조(미반출 임산물의 귀속) 을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거창군 금고에 귀속된다. 다만, 을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같은 임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군 금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 경우.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갑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반환) 갑은 매각대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벌채목의 표시) 골라베기 및 속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임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의 경우와 벌도목·원목·굴취수목 및 목탄 등으로 매각대상 임산물의 표시를 달리한 경우에는 임산물 인도 시에 그 표시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10조(수라의 설치) 매각대상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修羅)는 목(木)수라 또는 플라스틱수라에 한정한다.

제11조(임도시설)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에 필요한 임도시설 등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그 공사 완료 즉시 갑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갑은 그 검사 결과 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을이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제12조(반출완료 통보)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 ① 을은 매수한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국유림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다음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형질변경지 실측도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갈음한다.

임지 소재지	지번 (임반·소반)	공부면적 (㎡)	대부·사용허가 면적(㎡)	산지전용면적 (㎡)	기간	비고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균유림으로서 최초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균유림 외의 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다.

제14조(시설물의 철거) 매수한 임산물의 채취·가공 또는 운반을 위해 을이 국유림 안에 설치한 시설(임도 시설은 제외한다)의 철거가 필요하여 갑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철거해야 한다.

주: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군유임산물(입목) 매각 특수조건

1. 매각대상목 중에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여 거창군 산림과에서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매수자는 입찰 전 매각 수량·품질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에 매각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 방문 시에 주변여건 및 반출노선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임산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반출 완료 후 적지검사를 받기 전까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4. 현지 임산물 운반로 시설은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매수자가 설치 및 보수를 실행하여야 하며 운재로의 시설 전 거창군 산림과와 협의 후 시설하여야 하고 산원에서 일반도로 사이의 반출 구간 중에 있는 사유지를 통과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매수 계약자가 직접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매각 산물의 반출작업 시 반출노선의 노면상태에 적합한 톤수의 화물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적을 금하고, 특히 운반로 내 구간에는 대형차량(5톤 이상)이 진·출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토지 혹은 그에 인접한 시설물을 파손·손상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반출완료 후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및 노면정비,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6. 매각 생산재의 반출 작업으로 인하여 개인 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매수 계약자는 성실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붙임 “목재생산 사업지 안전사고예방 조치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써 작업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사업 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